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본격 출발

정부는 7월 10일(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5월 25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0일(월)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장소 / 참석)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 /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 등), 대통령실, 중앙부처, 지방협의회 등 관계자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자치분권기획단 +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지방시대기획단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동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하였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위원회 CI 제작에 자문한 이도훈 교수(홍익대학교/前제일기획 마스터, 본부장)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총감독을 역임하였음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지원팀장(출범식) 총괄기획과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과 장 팀 장 서기관	고상미 (044-251-3105) 정병찬 (044-251-3180) 고현웅 (044-251-3106)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송주호 (044-203-4410) 조동후 (044-203-4451)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상진 (044-205-3301) 박주언 (044-205-3318)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현경 (044-215-7550) 이재철 (044-215-7551)



□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추진
※ (국정과제 120-3) 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 체계 마련
- 국무회의('22.5.)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발표 이후, 업무보고시 분권위-균형위를 통합한 ^(가칭)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발표('22.7.)

□ 주요 내용

- (계획 통합) 자치분권·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
- (주요 시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과제로 구성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유지, 현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18*+ 위촉 21**)
 - *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 **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 (심의·의결)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
 - (보고·점검)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점검 가능
- (균특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

□ 추진배경

-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으로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CI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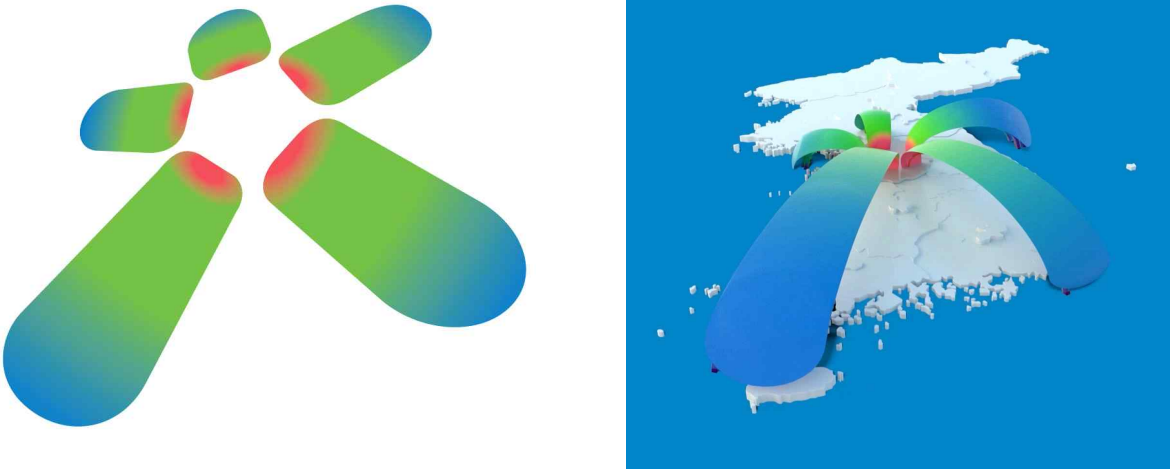
□ 추진방향

-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
- Committee Identity 형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감 주는 이미지
- 기억이 용이하고 관심을 유발하며, 다른 위원회와 차별화된 세련된 감각의 가독성 높은 직관적 이미지

□ 추진내용

- (기초디자인개발) 위원회 성격을 반영한 기본 디자인컨셉
 - 개발항목 : 심볼, 워드마크, 색상체계, 지정서체, 그래픽모티브 등
 - ※ 시안보고 및 전문가 자문, 위원회 협의를 통한 조정·보완
- (응용디자인개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디자인 개발
 - 서식류 : 명함, 봉투류, 메모지, 초청장, 스티커 등
 - 홍보물 : 다이어리, 쇼핑백, 홍보 리플렛 및 머그컵 등 굿즈용
 - 디지털 : 온라인 로고, 소셜미디어, 영상 및 애니메이션(5초 이내)

□ CI 기본 디자인 및 활용형

기본 디자인(표준, 입체)	
CI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형상화
색상	우리의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하되 인구, 산업, 대학이 밀집된 도시는 빨강, 지방은 숲의 색깔인 초록, 바다는 파랑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지향함을 표현
	
활용형	
	
	

□ 추진배경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23.5.25.)
 - 동 법률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행 「지방분권법 시행령」·「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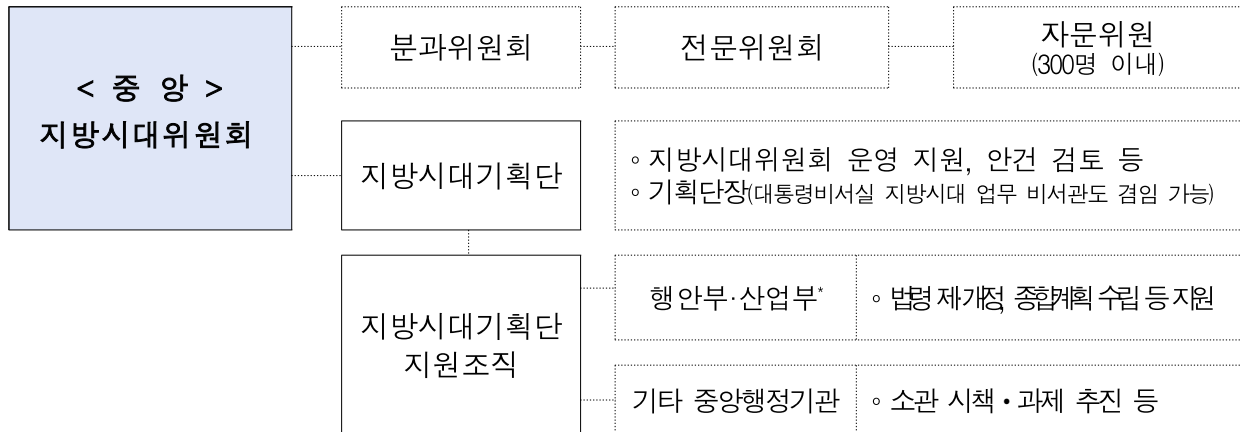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통합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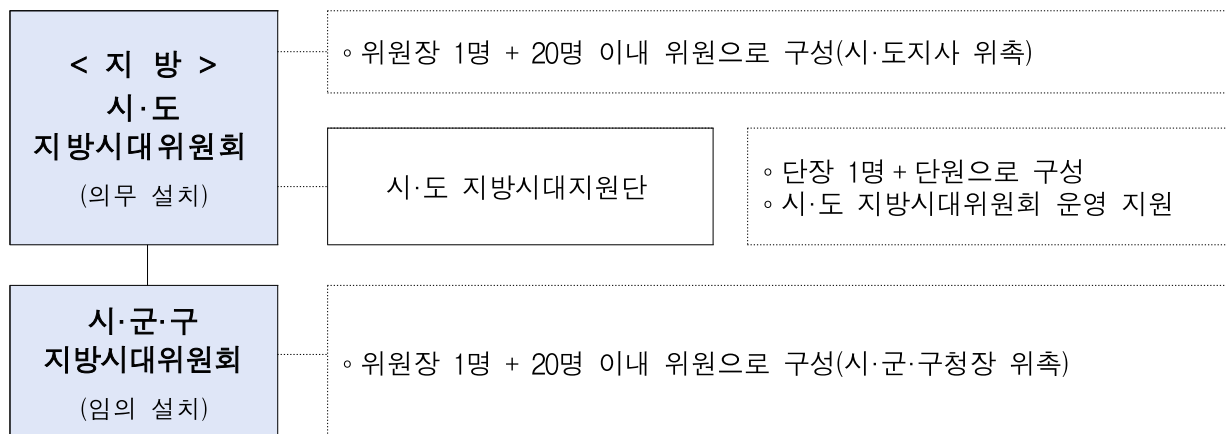
통합법	통합법 시행령
제1장 총칙(§1~§5)	제1장 총칙(§1~§4)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6~§11)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5~§17)
제3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12~§61)	제3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18~§58)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62~§73)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59~§75)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4~§94)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6~§93)

- (총칙) 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의 위임사항 규정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명시, “그 밖의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종합계획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평가방법 구체화
 - (계획수립)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평가방법) ①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②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③부진사업 대상 별도 심층평가 실시

- (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 「균형발전법」상 균형발전시책, 「지방분권법」상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운영·지원절차 등을 규정
 - ①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지정·변경·해제절차 마련 (§20~§22),
 - ②지방 사업장 신·증설 기업 지원의 지원대상 구체화 (§23)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②산업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지방분권-균형발전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규정 신설)



-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
 - (부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
- ※ 특별법(안) : 국회 본회의 의결(5.25.) → 국무회의 의결(6.5.) → 공포(6.9.), 시행(7.10.)

붙임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전후

현 행	시행 후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별도로 추진되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으로 지방소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족	◦ 투자기업 등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근거 마련